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자료 작성〉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73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 조사시 석유·석탄·전력·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부문 에너지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작성·분석·공표하는 통계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생략)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 ----- -----.
1. 에너지 <u>사용</u>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1. ----- <u>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과</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에너지법」 제19조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도록 하고(제1항), 이

1)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와 별도로 에너지 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항).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 통계 작성 및 공표가 충분하지 못해 산업 부문의 체계적인 에너지전환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전반적인 에너지사용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부문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산업부문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정합성 있게 수립·시행하게 됨으로써 온실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²⁾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제19조제2항제1호는 ‘에너지 사용 과정과 산업 공정에서

2)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3.)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27.6백만톤CO₂e 중 산업부문은 260.5백만톤CO₂e로 35.8%를 차지하여 전환부문(269.6백만톤CO₂e, 37.1%)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공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구분하여 '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문의 의미가 변경(통계 작성 대상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에너지통계연보³⁾ 등)에서 이미 신·재생에너지 공급·소비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이 낮고,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통계 작성·분석 대상을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해당 조문의 의미가 달라져 통계 작성·분석 대상이 변경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8

3) 석탄,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신재생(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폐기물, 지열, 태양열), 전기, 열 등 에너지생산 및 수·출입, 일차에너지 공급·소비, 최종소비 등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있음 (작성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